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운영회비에 관한 규정

제정 2020. 3. 10.

개정 2020. 8. 4

개정 2022. 4. 12

개정 2022. 9. 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건축사회(이하 “협회”라 한다.) 운영회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회비의 종류 및 납부원칙)**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운영회비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설계업무 운영회비

가. 「설계 운영회비 운영 규정」에 따라 회원이 대구광역시 내 건축물에 대한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납부하는 운영회비

나.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신청 시 신청인이 납부하는 운영회비

2. 감리업무 운영회비

가. 「건축공사감리자 선임에 따른 운영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납부하는 운영회비

나. 「대구광역시건축사회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납부하는 운영회비

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선임에 따른 운영규정」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가 납부하는 운영회비

3. 「건축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업무대행자가 납부하는 운영회비

4. 기타 건축사회 운영을 위해 이사회에서 정한 운영회비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운영회비는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회비를 납부할 경우 회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총합계 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운영회비의 감면)** 제2조제1항제1호 가목과 나목 중 적은 목의 운영회비는 감면한다.

**제4조(미납에 대한 조치)** 운영회비 미납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정관 및 제규정, 회칙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유권해석) 이 규정의 운영상 필요한 유권해석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세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간한도에 관한 규정 적용) 제2조제3항의 연간한도 금액은 회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1월 1일부터 이 규정 시행 전까지의 납부 금액도 합산하여 적용한다.

## 부 칙(2020. 8. 4.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허가신청분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 4. 12.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2. 9. 6 개정)

제1조 (시행일 등) 이 규정은 2022.09.13. 이후 최초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단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선임한 건에 대해서는 각 회계연도별로 소급 적용한다.

[별표1] 운영회비의 종류와 납부금액

종 류	납부금액	비 고								
1. 설계 운영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0원/㎡</li> <li>- 대수선허가, 용도변경허가, 가설건축물허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50원/㎡ 와 설계비의 1% 중 적은금액을 적용</li> <li>- 공장, 창고용도 건축물 운영회비의 1/2</li> <li>- 운영회비 상한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li> </ul>	「설계 운영회비 운영 규정」 제4조								
2.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 운영회비	<table border="1" style="margin: auto;"> <thead> <tr> <th>면 적</th> <th>운영회비(원/건)</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66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60㎡ 초과 ~ 1,000㎡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0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0㎡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0</td> </tr> </tbody> </table>	면 적	운영회비(원/건)	660㎡ 이하	100,000	660㎡ 초과 ~ 1,000㎡ 이하	150,000	1,000㎡ 초과	200,000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향상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및 「운영세칙」 제3조 [별표 2]
	면 적	운영회비(원/건)								
	660㎡ 이하	100,000								
	660㎡ 초과 ~ 1,000㎡ 이하	150,000								
1,000㎡ 초과	2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자가 협회미가입자 또는 타지역 회원인 경우, 시스템 사용 및 중 자료열람에 따른 운영회비를 추가할 수 있다.</li> <li>-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른 자문대상일 경우, 상기 운영회비의 50%를 적용한다.</li> <li>- 자문대상이 대수선일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최저 운영회비를 적용한다.</li> </ul>										
3. 건축물 공사감리 업무 운영회비 (허가권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비의 5%</li> <li>- 기존 감리비의 10%이상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회비를 최종감리비에 따라 재정산한다.</li> <li>- 운영회비 상한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li> </ul>	「건축공사감리자 선임에 따른 운영규정」 제9조 및 「운영세칙」 제2조 [별표 1]								
4. 건축물 공사감리 업무 운영회비 (허가권자 지정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0원/㎡</li> <li>- 공장, 창고(농·축·수산)용도 건축물 운영회비의 1/2</li> <li>- 연면적합계가 10%이상 증감된 경우, 증감되는 연면적합계가 50㎡ 이상일 경우, 계약금액에 5%이상 증감될 경우 재산정</li> <li>- 운영회비 상한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li> </ul>	「대구광역시 건축공사감리업무 운영규정」 제11조 및 「운영세칙」 제7조, 「운영지침」 제4조								
5.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운영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리비의 3%</li> <li>- 기존 감리비의 10%이상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회비를 최종감리비에 따라 재정산한다.</li> <li>- 운영회비 상한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li> </ul>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선임에 따른 운영규정」 제9조 및 「운영세칙」 제2조 [별표 1]								
6. 사용승인을 위한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운영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권자가 지급하는 업무대행수수료의 3%</li> </ul>	「건축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0조 및 「시행지침」 제2조 [별표 1]								

※ 상기 운영회비 각각의 건당한도는 500만원으로 하며, 회계연도 기준 총합산금액은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